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25

발의연월일: 2020. 6. 22.

발 의 자:서삼석·전용기·윤후덕

이원욱・이동주・천준호

정정순 • 최종유 • 서영석

김남국 · 소병철 · 허 영

신정훈 · 김승원 · 강득구

의원(15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운영,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정밀조사 및 해양생태계의 변화관찰, 해양생태도의 작성 등을 하고 있음.

그런데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을 통합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세부적인 규정이 미비하고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양생태계 관리의 실효성과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 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도록 하고, 해양 생태계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해양생태축 보전·관리대책 수 립·시행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안 제9조제1항).
- 나.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생태축을 설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 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 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해양생태축의 보전·관리를 위한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9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보호·관리하고 생태적 구조 및"을 "보전·관리하고 해양생태계의 구조와"로,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적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해역의 생태계를 연결시키는 서식공간의 연결망"을 "위해 중요한 해역을 연결하여 구성된 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해양생태축의 설정과 이를 보전·관리하기 위한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9조제1항 중 "수립하여야"를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구축·추진에"를 "설정 및 관리에"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인간이 해양생태계로부터 얻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에 관한 사항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해양생태축의 설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생태축을 설정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생태축을 설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고고시하여야 한다.
- ③ 해양생태축의 설정 기준, 방법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9조의3(해양생태축의 관리계획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해양생태축의 보전·관리를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양생태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1.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보전계획 수립
 - 2. 제25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관리
 - 3.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토지등의 확보
 - 4. 제44조제1항에 따른 바닷가휴식지의 지정·관리
 - 5.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경관의 보전을 위한 조치
 - 6. 제46조제3항에 따른 훼손된 해양생태계의 복원 등을 위한 필요한

대책의 수립·시행

제28조의 제목 중 "관리기본계획"을 "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각호 외의 부분 중 "해양보호구역관리기본계획을"을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을"로 하며, 같은 조 각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한다.

제43조제4항 중 "면제에 관하여"를 "감면 등에"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9조의2제3호 중 "해양보호구역관리기본계획"을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으로 한다.

제6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해양생태축"이라 함은 해양	5
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을	
통합적으로 보호・관리하고	<u>보전·관리하고</u>
<u>생태적 구조 및</u> 기능의 연속성	해양생태계의 구조와
을 유지하기 <u>위하여 생태적으</u>	위해 중요한 해역을 연
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적	<u>결하여 구성된 축</u>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해역의	
생태계를 연결시키는 서식공	
<u>간의 연결망</u> 을 말한다.	
6. ~ 15. (생 략)	6. ~ 15. (현행과 같음)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생태	
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	
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4의2. 해양생태축의 설정과 이를
	<u>보전·관리하기 위한 관리계획의</u>
	<u>수립·시행</u>
5. • 6. (생 략)	5.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 제 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 3. (생략)
- 4. 해양생태축의 <u>구축·추진에</u>관한 사항
- 5. ~ 9. (생 략) <신 설>

10. (생략) ③ ~ ① (생략) <신 설>

제9조(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
의 수립) ①
<u>수립하고, 5년마다 그</u>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이를 변경하여야
②
<u>.</u>
1. ~ 3. (현행과 같음)
4 <u>설정 및 관리에</u>
5. ~ 9. (현행과 같음)
9의2. 인간이 해양생태계로부터 얻
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에 관한 사항
10. (현행과 같음)
(3) ~ (1) (현행과 같음)
7110 & OF 11 OF ALCH OF ALA
제9조의2(해양생태축의 설정) ① 해
제9조의2(해양생태숙의 설정) ① 해 양수산부장관이 해양생태축을 설정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양수

<신 설>

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 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생태축을 설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고 고시 하여야 한다.
- ③ 해양생태축의 설정 기준, 방법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 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해양생태축의 관리계획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해양생태축의 보전·관리를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양생태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1.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보전계획 수립
- 2. 제25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관리

제28조(해양보호구역의 <u>관리기본</u> <u>계획</u>)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 보호구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 체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사항 이 포함된 <u>해양보호구역관리기</u> 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 여야 한다. <u><후단 신설></u>

1. ~ 4. (생 략) <신 설>

3.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 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토지등 의 확보 4. 제44조제1항에 따른 바닷가휴식 지의 지정·관리 5.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경관의 보전을 위한 조치 6. 제46조제3항에 따른 훼손된 해 양생태계의 복원 등을 위한 필요 한 대책의 수립·시행 제28조(해양보호구역의 관리계획) ①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을--------- 해양보호구역관리계 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과 협의하여야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

<신 설>

- 제43조(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 의 설치·운영) ① ~ ③ (생 략)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 료의 금액 징수절차 및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 산부령으로 정한다. <단서 신 설>
- 제49조의2(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의 용도) 제49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제51 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 다.
 - 1. 2. (생략)
 - 3. 제28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시행
 - 4. ~ 8. (생략)

τ	-	Ļ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 항 외에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43조(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 **4** -----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한다.
- | 제49조의2(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 1. · 2. (현행과 같음)
 - 3. -----해양보호구역관리계 획----
- 4. ~ 8. (현행과 같음) 제6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제6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현

(생 략)	행과 같음)
<u><신 설></u>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
	받은 권한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
	<u>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u>
② (생 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